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의영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2년 1월 10일
-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1일

3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(시행 '22. 1. 13)에 따른 단순인용 조문 정비 및 상해보상 지급범위 확대 등 반영

4. 주요내용

가. 법령 위임 근거 조항 변경 (안 제1조)

- (현행) 시행령 제35조 → (개정) 시행령 제37조

나. 의원 상해보상 지급범위 확대 (안 제 2조)

- (현행) 회기 중 직무 → (개정) 직무

다. 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(안 제9조)

- 위원회 명칭 (현행)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→ (개정)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

라. 법령에 따라 별지 서식 내용 중, 인용법조항, 위원회 명칭 등 변경 (별지 제1, 2호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덕항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(시행 '22. 1 .13.)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명칭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, 의원 상해보상 지급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1조에서는, 인용법령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,
 - 이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제35조가 제37조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음.
- 안 제2조에서는,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“직무”의 범위를 확대 정비한 것으로,
 - 이는, 이전 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에서는 보상금 지급 범위가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상해·사망 등의 경우로 한정되었으나,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비회기 중이더라도 직무로 인한 상해·사망 등의 경우로 확대된 것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.

前 「지방자치법」	現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22. 1. 13.]
제34조(상해·사망 등의 보상) ① 지방의회의원이 <u>회기 중 직무</u> (제61조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)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	제42조(상해·사망 등의 보상) ① 지방의회의원이 <u>직무</u> 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- 안 제6조에서는, 정확한 명칭의 사용으로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, 현행 “의장”을 “도의회의장”으로 개정함.

- 안 제9조에서는, 위원회의 명칭을 “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”에서 “충청북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”로 변경한 것으로,
 - 이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음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 [시행 2022. 1. 13.]

제37조(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)

-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.

-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서는,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조항 및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고,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변경함.
 -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¹⁾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(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및 개인)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처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, 또한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지방의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·허용하는 내용이 없는 바,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 - 참고로 현재 12개 광역의회²⁾에서 이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및 심의 결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운영 중임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(시행 '22. 1 .13.)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명칭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, 의원 상해보상 지급

1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 1. 법률·대통령령·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 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

2) 현재 12개 광역의회(서울, 인천, 대전, 울산, 세종, 경기, 강원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)에서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및 심의결과 서식에 주민등록 대신 생년월일을 기입사용하고 있음.

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법적, 내용적으로 타당하며,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 협의를 거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.